명 도 협 의 서

매수인(이하 "갑")과 점유자(이하 "을")는 아래 부동산의 인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.

1. 부동산의 표시

경매 사건번호	지방법원 20 타경 호		
소재지			
점유 부분		**점유 형태**	□ 채무자(소유자) □ 임차인 □ 기타

제1조 (인도 일자)

을은 20 년 월 일까지 위 부동산에서 을과 동거인의 모든 짐을 빼고, 열쇠·출입카드·현관 비밀번호 등 일체를 갑에게 넘긴다.

제2조 (이사비)

이사비 총액	금 원정 (₩)
지급 시기	을의 인도를 갑이 확인하는 즉시
지급 방법	□ 계좌이체 (은행: 계좌: 예금주:) □ 현금

제3조 (관리비·공과금 정산)

인도일까지 발생한 관리비, 전기·수도·가스 요금 등은 을이 부담하며, 을이 정산하지 않은 금액은 갑이 이사비에서 공제할 수 있다.

제4조 (인도 상태)

을은 부동산의 시설물(문, 창호, 조명, 배관, 붙박이 가구 등)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떼어 가지 않으며, 훼손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한다.

제5조 (남은 물건)

인도 후 부동산에 남은 물건은 을이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며, 갑이 이를 처분하여도 을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.

제6조 (불이행)

을이 제1조의 날짜까지 인도하지 않으면 이 합의는 효력을 잃으며, 갑은 이사비를 지급하지 않고 인도명령·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.

특약사항

위 합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합의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·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 년 월 일

갑(매수인)	**주소**	
	연락처	
	성명	(인)

을(점유자)	**주소**	
	연락처	
	성명	(인)

폼보따리 (formbottari.com) 무료 양식 · 본 양식은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사용·수정에 따른 결과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.